

“당신과 비감염인 사이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 때.”

“HIV/AIDS 감염인은 아무 죄 없음!”

“여러분들과 감기 환자에 대한 대우가 같아지는 날까지 지지하겠습니다.”

“질병이 있다고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2. 이윤보다 생명이다! HIV/AIDS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건강할 권리를 ‘공급’하지 마세요, ‘제공’해 주세요.”

“당신들의 이윤을 위한 지적 재산권보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약이 필요한 이유는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생명을 돈으로 흥정하는 로슈는 반성하라! 즉각 푸제온을 조건 없이 공급하라.”

“자본의 돈놀이 중단하고 치료제를 공급하라!”

3. HIV/AIDS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 기본을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요.”

“치료비 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치료의 보급, 의학의 평등함이다.”

“당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감염인들의 인권이고 건강이다.”

“로슈보다 싼 값이라고 제시하면 다 오케이인 줄 아니? 감염인 인권 좀 보장해!”

4. 우리 모두는 HIV/AIDS 감염인들이 최상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일 때 아주 작지만 열, 백이 모이면 그 힘은 무한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액션에 함께하겠습니다.”

“호들갑 떨며 외면하는 이 세상에 당신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당신들도 힘을 내는 겁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맞서, 같이 싸워나가요.”

“우리는 모두 따뜻한 피가 흐르는 다 같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감염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염인들의 투쟁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반(反)신자유주의 운동의 일부입니다.”

* 2008년 12월 1일, 에이즈 감염인 인권을 지지하는 1201명의 ‘레드리본’ 페이스 선언 참가자들이 서울시청 프레스센터 앞에서 선언하다.

행동을 이끈 언어

윤미 | 인권운동사랑방

“로슈! 냉큼 오슈! 푸제온 갖고 오슈!” 직접 손으로 쓴 이 문구와 함께 활짝 웃는 얼굴이 찍힌 사진이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나는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지지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손을 사진에 담았다. 감염인의 인권을 지지하는 한마디를 쓰고 자기 신체의 일부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 이처럼 2008 HIV/AIDS 감염인의 인권선언은 페이스 선언 방식으로 이뤄졌다.

어떤 사안에 지지를 한다고 하면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하고 싶은 한마디 정도를 적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페이스 선언’은 리플렛에 세 가지 글을 적어야 한다. “하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는 로슈 제약사에 따끔한 말 한마디를!” “둘, 감염인 인권은 외면하고 치료비 삭감에만 몰두하는 보건복지부에 따끔한 말 한마디를!” “셋, 에이즈 감염인에게 지지의 한마디를!”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쓴 문장과 함께 사진 한 장 찰칵. 물론 얼굴만이 아니라 원하는 신체의 어느 부위든 상관없다.

2008년 특별히 감염인 인권주간 준비단에서 페이스 선언팀을 꾸린 건, 좀 더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나는 감염인의 인권을 지지한다’ 는 의미로 내 신체 일부를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적극

적인 행위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간 행동이 당사자들에게 용기를 줄 뿐 아니라 지지자와 당사자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를 상상하게 했다.

한국 사회에서 에이즈 감염인의 얼굴은 늘 모자이크 처리되고, 낙인과 차별 때문에 감염 사실조차 말하기 힘들다. 1980년대 후반 국내에 에이즈가 처음 등장한 이후부터 한국 정부는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행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행사는 1회성 홍보나 상주기로만 진행될 뿐이고 무엇보다 왜곡된 정보로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공포를 확산시킬 뿐이다. 그래서 감염인들은 늘 감시의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인들은 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약값이 싸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공급을 거부한 제약회사 로슈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사회적 차별이 자연스레 가난으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지는 현실에서, 일 년에 천만 원이 넘는 약값을 감당하는 건 감염인에게 무리였다. 그렇다면 대체 제약회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약을 만드는 것인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페이스 선언팀은 2008년 11월부터 한 달여간 사람들의 선언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당사자든 지지자든 상관없었다. 우리에게 인권선언문을 만드는 건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였다. 처음엔 사람들에게 페이스 선언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실 페이스 선언이 귀찮고 복잡할 수 있다. 자신의 언어로 한마디를 풀어내려면 유인물에 적힌 에이즈 감염인의 날에 대한 의미나 한국 상황에서 벌어지는 감염인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읽어보아야 한다. 거기다 자신이 쓴 선언 한마디와 함께 신체 일부의 사진까지 찍어야 했다.

하지만 빠르게 서명을 하고 빠르게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글을 읽고 어떤 선언의 한마디를 쓸까 고민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과 함께 자기 신체의 일부 사진까지 찍는다는 것은 더 넓고 촘촘한 연대의 가능성이었다. 또 페이스 선언을 받으러 다니는 우리 역시 직접 만나느라 발걸음이 더 부지런해졌고 사람들과 한 마디라도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는 노동자 대화를 찾아가고 에이즈 관련 토론회를 찾고 연대체의 행사를 찾았다. 또 거리로 나가 대중 캠페인을 했다. 비가 오는 대학로에서 준비한 유인물을 나눠주며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지지해주세요” “에이즈 감염인 인권을 위한 페이스 선언에 동참해 주세요” 라며 큰 소리로 외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친막으로 와서 리플렛을 읽고는 제약 회사 로슈의 만행에 같이 분노하고 감염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새로 고쳐갔다.

선언이라는 것은 행동을 이끄는 언어이다. 비록 아직 몸이 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앞서 말하거나 씀으로써 미래의 행동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비록 확인하진 못해도, 페이스 선언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손수 쓴 한 문장이 동력이 되어 차별과 치료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모은 페이스 선언지는 총 700여 장에 달했다. 차별에 대한 반대, 치료접근권 문제, 정부의 책임, 그리고 함께 싸워나가는 연대라는 큰 줄기로, 각양각색의 언어가 모여 있었다. 특히 “여러분의 당당한 액션에 함께하겠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감염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처럼 ‘함께’ 하자는 선언이 많았다.

모인 페이스 선언은 영상물과 퀵트로 다시 변신했다. 페이스 선언에 참여해준 모든 사람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고 그 사진이 모여 하나의 대형 리본의 형상을 띠도록 퀵트가 제작됐다. 그리고 12월 1일 에이즈의 날, 우리는 상 주기에 불과한 정부의 에이즈 날 행사에 반대하며 우리가 함께 작성한 인권선언문을 읽었다.

물론 감염인 인권에 대해 잘 아는 활동가가 인권선언문을 더 탄탄하게 잘 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선언지에 적어 준 한 문장 문장을 모으는 것을 택했다. 당사자부터 가족, 친구 또 길거리를 지나던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 쓴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은 비록 조악할지는 몰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 가능성과 지지로 촘촘히 엮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에이즈 감염인 인권선언은 지금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2008 감염인 인권주간 준비단

이 준비단은 매해 만들어지며, 인권주간이 시작되기 두세 달 전부터 모여 올해의 인권주간 일정과 내용을 짠다. 인권주간은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토론회, 인권문화제, 정부 행사 주변 시위를 큰 줄기로 하여, 해마다 중요한 쟁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잔가지를 덧붙인다. 2008년 인권주간에는 ‘감염인 치료접근권’을 주요 이슈로 잡아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거리 캠페인과 선전전을 기획했다.

2008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의 인권 도약을 위하여

2008 장애인 인권선언에 앞서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이 발효된 첫해이며,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내에서도 더욱 차별받는 중증장애인들은 이러한 의미들을 공감하기 어렵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고용환경 개선과 능력개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중증장애인을 이분의 일 인간으로 만드는 개악 직전에 있다.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생활은 더욱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권은 사람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기에 특정한 사람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으로서도 넘나들고 있다. 이주노동자, HIV/AIDS 감염인,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다양한 소수자들과 연대하여 장애인도 인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유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유엔 세계 장애인의 날 16주년에 기하여 2008 장애인 인권선언을 하고자 한다.



장애는 낯선 것이 아니며, 장애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2008 장애인 인권선언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차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등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인 시민·정치적 권리, 사회·문화·경제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 및 정보접근의 권리, 교육과 노동의 권리, 가족 및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법률지원을 받을 권리와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멸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모든 정책에 참여할 권리 등을 지닌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 반대 협약」, 「아동 권리 협약」 등의 모든 협약 속의 권리는 소외 없는 “모든 인간”의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는 무시되고, 차별은 당연시되어서 소외와 권리침해의 상황이 가중되어 왔다.

장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시대와 세대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장애는 낯선 것이 아니며, 장애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맞는 보조기구 및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의 기본단위로 혈연·이성에 중심의 ‘정상가족 중심주의’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의존적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온갖 위험에 처

하게 하였다. 이에 장애인 동거가족 및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함은 물론, 동거인 및 가족을 포함한 개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인권은 누구나 인격을 지닌 사람임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참여 및 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도 천부의 인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인은 다른 소수자와 연대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자원을 공유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존엄한 인간임을 재확인하며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선언한다.

1. 장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변화하는 개념이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장애 개념을 우리는 거부하며, 장애는 사회의 억압으로 인한 것임을 믿는다.
2. 모든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장애인은 장애 있음과 없음, 장애 유형, 성별,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용모 등의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4. 장애여성은 비장애 여성 및 남성과 다른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며,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생활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고 자주적으로 행사하며,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 어울려 살 권리가 있다.

6. 모든 장애인은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부 및 사회공동체는 실질적으로 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모든 장애인은 물리적·심리적·환경적인 모든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8. 모든 장애인은 빈곤에 처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하여 장애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본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9.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의 특징, 성별 등에 맞추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
10. 모든 장애인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1. 모든 장애인은 각자의 삶과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 및 특성에 의한 의사표현과 소통의 방식이 존중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2. 모든 장애인은 수용시설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13. 모든 장애인은 모든 시설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갖는다.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단거리로 접근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맞추어 접

근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14.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유형, 정도에 적합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15. 모든 장애인은 문화 향유의 권리를 갖는다.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여행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16. 모든 장애인의 가족이 육체적·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양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 사회로의 전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7. 발달장애인의 인지적·정서적 특징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시설과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고, 의사를 제한받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8.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수화는 공식적 언어로 인정되어야 한다.
19. 시각장애인은 출판된 도서 및 문서, 모든 시각 정보를 이용 가능한 음성 및 점자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20. 모든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권리침해나 차별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억압과 모순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008년 12월 3일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선언하다.



시혜와 차별을 넘어 평등과 인권으로

배용호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2006년 유엔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결의하고, 2007년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는 끊임 없이 불거져 나오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노동권은 더욱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도 해마다 예산 감축과 시간 감축 문제로 정부와 싸워야 하며,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임대 거부라는 차별에 맞닥뜨려야 한다. 지하철역에서는 오늘도 목숨을 담보로 한 휠체어리프트가 운행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탈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도에 장애차별로 인한 진정 건수는 530건으로 2007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험회사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입양 기관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인

* (주)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라는 이유로 입양자격을 박탈했다. 학교에서는 비장애아동의 학부모들이 교육에 방해된다고 장애아동의 전학을 요구하고 나섰고,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동의 없이 업무 배치를 했다. 2008년 한국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차별과 마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2008 장애인 인권선언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권선언의 의미를 장애인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인권선언으로 만들어보고자 했다. 2008 장애인 인권선언은 1989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되, 2008년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정책제안서와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운동, 이동권과 접근권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여성공감의 수정을 거쳐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장애여성공감이 장애인 인권선언 서두의 전문을 추가함으로써 최종본이 만들어졌다. 이 인권선언문은 2008년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선언되었으며, 이 선언문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으며, 동시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식의 날이기도 했다. 그 전날인 12월 2일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장애인활동보조 시간

연장 및 생활보장, 장애인연금법 제정 그리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12월 3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 인권선언식을 가진 후, 이어 장애인의 인권 회복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 등을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이러한 가두행진은 시설과 골방에 갇혀 살아온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이동권 투쟁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의 손으로 풀어가겠다는 강력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2008 장애인 인권선언문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008 장애인 인권선언문은 인권선언을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장애인 인권선언에 앞서'와 '2008 장애인 인권선언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 장애인 인권선언문은 2008년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표된 첫해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첫해이지만, 활동보조인 제도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마저도 중증장애인을 절반의 인간으로만 보는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더욱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앞에 장애인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있다.

2008 장애인 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차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등 모든 협약속의 권리의 주체인 "모든 인간"에 장애인은 소외되어왔으며 권리를 침해받아왔음을 지적하면서 장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아
러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함을 천명하였다.

2008 장애인 인권선언문은 모두 20개의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므로 기존의 의학적 관점
에서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거부하는 제1선언에 이어 모든 장애인은 차
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제3선언, 장애여성의 권리에 대한 제
4선언, 빈곤에 처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천명한 제8선언, 활동보
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선언한 제9선언,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으며,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표현할 권리에 대한 보장과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10과 제11선언, 자립생활할 권리를 천명한 제12선
언, 이동권 및 접근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선언한 제
13과 제14선언, 문화 향유권을 천명한 제15선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
정권을 선언한 제17선언,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선언
한 제18과 제19선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침
해나 차별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억압과 모순에 저항할 권리인 제20선
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 장애인 인권선언문 가운데 제1, 제4, 제9, 제
10, 제12, 제13, 제14, 제15 그리고 마지막 제20선언은 최근의 장애인 인
권의 흐름을 반영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08 장애인 인권선언문은 단지 하나의 선언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
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장애인의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이며, 향후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
야 할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아울러 그것은 장애인 인권을 위해 투쟁

하는 모든 활동가와 단체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수많은 당사국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
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못한 반면에
2008 장애인 인권선언문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선언문이라
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이 선언문은 1989년 장애인 인권헌장 이후 변화
된 사회 현상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현실
적인 선언문의 내용은 장애인 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들 속에서 인권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

무지개빛 다양성의 권리를 위해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과 취향,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지 여부, 하나의 성별로 확정되는지 여부, 성별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성역할의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차별은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 제한, 불리한 대우 및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억압적인 상황을 형성·유지·방치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우리는 성별, 인종, 국적, 연령, 종교, 장애, 건강 및 경제적 지위 등을 비롯한 여타의 차별,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연관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 이 선언은 차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제까지 충분히 드러나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권리들을 실질적인 인권의 내용으로 삼도록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1.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이다.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퀴어, 인터섹슈얼(간성), 에이섹슈얼(무성애자) 등 모든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자는 매일매일 권리선언을 한다. 인권선언은 모든 소수자의 삶 자체이다. 권리의 내용은 사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이다.

2.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존중받으며 정당하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지닌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성소수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동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취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승진 및 보직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그리고 직장내의 공적·사적 관계망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성소수자는 성정체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취향이 다양할 수 있으며 성별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제하고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육의 원칙은 교육기관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5. 성소수자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법 적용을 받거나 공정한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하도록 억압이나 압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성소수자는 주거, 매체 등의 공공재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그와 같은 공공재를 생산·분배할 권리가 있다.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구매의 과정에 성소수자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내포하는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7.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취향, 성별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주체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가족과 공동체의 형태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가 구성된 가족과 공동체는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로서만 구성된 가족과 공동체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누구나 공적 서류상의 보호자나 동반자, 각종 공·사 보험의 수혜자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8. 성소수자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의료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의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의료 지원의 패러다임을 넘어, 각자의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즉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에 관하여 치료를 강요하거나 억제 위한 의료적 조치를 당하는 등의 의료적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2008년 12월 5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참가자들이 서울 서강대에서 선언하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오기람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지난 2008년 11월 22일 '2008 LGBT 인권포럼'이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말한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최한 이 포럼에서는 릴레이 인권선언의 일환으로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을 완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무지개행동'의 '열린회의'(정기회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선언의 초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인권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어 짧은 의미 있는 선언을 만들 수가 있었다. 완성본은 '열린회의'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2008년 12월 5일 공식 발표되었다.

'무지개행동'이 릴레이 인권선언에 참여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인권선언이라는 형식이 성소수자의 인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한 것이었다. '선언에 그치는 선언'이 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였다. 그러나 개인 활동가들과 10여 개 단체가 모인 '무지개행동'의 특성상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권선언을 준비해야 했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감 속에서 인권선언의 의미를 정리하기에

는 조금 벅찼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의미를 공유할 수 있었다.

첫째, 성소수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일이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성소수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없는 존재로 치부되거나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의 일반적 담론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주체로서의 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권선언을 집단적으로 쓰고 고쳐가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권리와 차별에 대한 감각을 섬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소수자 권리선언 작성 과정에서 에이섹슈얼(asexual, 무성애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성별에도 성적 이끌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의 성적 지향으로 확고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 또 어느 누구나 성별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성소수자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받아들이며 권리의 내용들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셋째,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성소수자 스스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의 가족에 대한 권리 항목을 보면 성소수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가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

넷째, 다양한 영역에서 릴레이 인권선언을 벌이는 이 시기에 동참함

으로써 성소수자의 연대 의지를 확인한다. 주거권 선언이나 비정규직 선언, 장애인 인권선언, HIV/AIDS 감염인 인권선언, 청소년 인권선언 등 모든 릴레이 선언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긴밀하게 연관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릴레이 선언에 함께하며 서로의 고민을 깊고 넓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연대를 통해 인권을 외쳐야 한다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권선언을 준비하기로 하였지만, 선언문을 만드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항목을 설정하는 일, 형식을 확정하는 일부터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성소수자에 SM(가학·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남자끼리나 여자끼리 커플로 여관 갈 때 있잖아, 뻔히 빈방이 있는데도 방 다 나갔다고 안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권리는 뭐지?" "트랜스젠더가 동성애자랑 겪는 것이 다른데, 이 내용들이 한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기존의 선언문과는 형식부터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 속에서 내용과 형식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일단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선언을 처음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구성을 취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시각이나 형식에서 벗어나는 흥미로운 텍스트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보다 진전된 선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완성된 '성소수자 권리선언'의 핵심은 모든 생활과 제도 영역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소수자는 정말이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선언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전체 사회구조와 관련된 것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른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

용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친밀한 동성 관계를 바라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관한 것이기도 하며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의 문제이기도 있다. 또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일이 있거나 재판을 받는 일이 있을 때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며, 사회의 모든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정보 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이였다. 대부분의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력 사이에서 매순간 고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권리와 함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주체적 통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정보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했다.

소수자는 매일매일 권리의 선언을 한다. 인권선언은 모든 소수자의 삶 자체이다. 차별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불편함이 있을 때 이를 발설하는 행위가 권리의 선언이다. 그 권리의 내용은 사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이다. 딱히 생존과 관련돼 있지 않은 것들도 많다. 남자가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활보할 권리, 여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이 낯설거나 불편한 일이 되지 않을 권리, 트랜스젠더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을 권리, 무지개 깃발 아래 있을 때 흑여 이는 사람이 볼까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되는 권리 같은 것들이다. 이런 권리들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름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쉽게 무시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존만큼이나 중요성을 지닌다. 남성에게 “너는 여성이며 여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동성애자에게 “너는 이성애자이며 이성에게만 사랑과 성욕을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일들은 얼마나 끔찍한가? 성소수자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 성소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은 인권선언의 영역으로 언제나, 이미 도약해 있는 것이다.

이번의 모든 선언을 통해 우리가 깨우친 권리 감각으로, 나와 다른 이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나 아픔과 상처에 무관심했었는지 생각하며, 그 생각 자체에서 좀 더 아프고 상처 받을 수 있었으면, 그래서 지금의 불편하고 차별받는 현실을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므로, 일상 속에서 덜 아프고 덜 상처받도록, 덜 불편하고 덜 차별받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인권을 선언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선언

보호를 거부하고 주체로

전문

모든 이에게는 노동할 권리가 있고, 그 노동 속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투쟁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노동을 해도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권리를 박탈당한 불안정한 노동 속에는 고통만이 가득하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노동할 권리 자체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평등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이에게 부여되고 실현되어야 할 노동의 권리는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의 반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았던 '비정규직보호법'은 보호는커녕, 자본이 비정규직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외주화의 확산으로 이어져,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한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시혜적으로 접근했던 시각은 비정규직보호법을 잘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비정규직법의 본질적 성격을 감추고 이 악법에 '보호'의 외피를 덧씌워주고 있다.



우리의 선언은 모든 불안정 노동자를 움직일 것이며,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움직일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보호법이 갖는 보호라는 기만을 거부한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불리우는 것을 거부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 내일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기간제 노동, 이중 착취에 의해 최저의 임금을 또 다시 포기해야 하는 파견·용역 노동이 모두에게 보장된 미래라면 저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선언을 통해 스스로의 삶과 노동의 주체로, 투쟁의 주체로 당당히 설 것이다.

이 선언은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을 반복해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내며, 그 권리를 실천적으로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에의 연대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비정규직법 폐기를 위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선언은 모든 불안정 노동자를 움직일 것이며,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움직일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선언

하나, 분할당하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하나,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해고되지 않을 권리

하나, 비정규직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사회를 거부할 권리

하나, 불안정 노동 철폐와 비정규직법 폐기를 위해 '스스로' 나서서 투쟁하고 연대할 권리

하나,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하나, 초과노동 없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권리

하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하나, 노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적용!

하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하나,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

하나, 노동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 2008년 12월 6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선언하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노동권 현실은 어떨까?

손장일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용/석!!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이름인지도 모르겠다. 열사가 종묘공원에서 비정규노동자대회 도중 분신했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나도 무의식적으로 잊고 있었던 이름……. 2008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사업을 진행할 때조차도 한 번도 떠올려보지 못했던 이름……. 그 이름을 지금 새삼 떠올려본다. 그 이름을 떠올려 돌아가신 열사에 대한 죄의식을 가져야,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의 의미를 일상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다.

이제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무의미한 듯하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이미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고, 비정규노동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이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이 추진되었던 배경이었다고 새삼 의미 부여를 하고 싶다. 권리선언을 한 사람들

이 '내가 비정규직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과정이 바로 비정규 권리선언의 과정이었으니까.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권리선언도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인권으로서의 노동권이 일상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행동수칙이자 권리였으니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란 무엇일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란 존재할 수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비정규직이라는 자신의 존재 조건이 이미 무권리 상태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래서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상태야말로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었다. 내가 스스로 '노동권'이라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선언' 한 행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무권리 상태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부정함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비정규직 일반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것이 1만 명이 넘는 선언자들의 행동이 의미 있는 이유이다.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에는 비정규직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동이 불안정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화를 수용하고 용인한다면, 이 땅 전체 민중들의 삶 자체가 무권리 상태에 놓이도록 강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의 이윤욕은 사회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기본적인 권리를 하나 둘 빼앗아가며 자본주의 사회를 연명해가고 있지 않은가!

다양한 사람들이 스스로 선언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대 운동이 필수적이다. 어느 운동에서든 그렇다. 권리선언 운동 과정도 그래서 연대 운동을 조직하고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 땅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노동조합 등의 활동가들이 연대 운동을 통해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운동을 조직했다. 물론 각 단위마다 참여 수위와 폭은 달랐다. 역량 투여도 달랐다. 하지만 '비정규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연대 운동 네트워크를 통한 권리선언 운동은 이후 지속적인 비정규 연대 운동의 씨앗을 뿌려주었고 그 문제의식 아래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어떠한 성격을 가진 운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인지, 어떠한 점이 배울 만하고 어떠한 점은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는 점도 비정규 권리선언 운동이 연대 운동으로서 조직된 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이다.

물론 한계도 있다. 공동으로 선언자들을 조직하고 공동으로 선언자 회의를 통해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선포하여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염원을 드러내었지만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연하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며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연대 운동을 벌여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히고 '동상동몽'을 위한 공동사업이 계속되고 토론이 계속될 때, 이 차이도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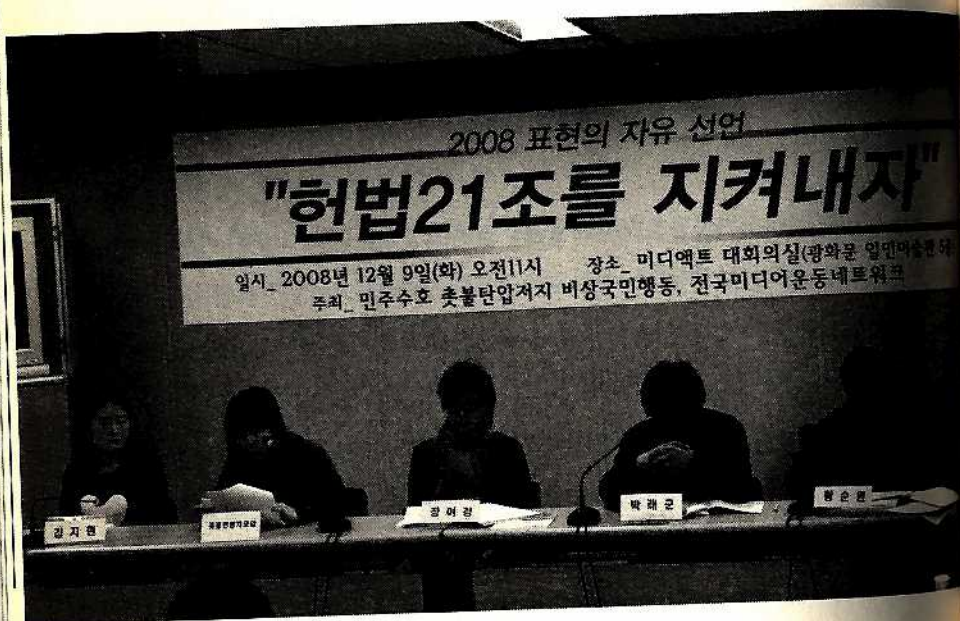
어느덧 2008인권선언과 비정규 권리선언 사업이 종료되고 해가 바

뀌었다.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사업을 일회성 사업으로 기획했던 것이 분명 아니다. 우리가 애써 생산하고 애써 선언했으며 애써 조직했던 선언 운동과 선언자 대회의 의미를 계속 살려가기 위해서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11개 권리선언 항목을 더 구체화하고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투쟁사업장을 통해서, 각자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 공간을 통해서, 각자의 일상과 생활 공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현실에 순응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권리를 잇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비정규 노동 열사들을 무의식적으로 잇고 살듯이 말이다.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억압받는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같은 내면의 자유를 포함하며, 이를 외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권리이며,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폭력을 동반하거나 증오범죄이거나 전쟁을 선동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2008년 한국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 집회와 시위, 행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일삼았고, 평화적인 시위 참여자에 대한 연행과 구속을 과도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벌금 부과와 과도한 수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방법으로 촛불 집회 참여자들의 입을 봉쇄해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국가로 분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기소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안 기관들이 개인에 대한 감시와 사찰, 통제를 지금도 자행하고



‘2008 표현의 자유 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론적인 의미 확인이자 우리 시대에 맞닥뜨린 자기 검열의 위협에 지지 않으려는 저항의 움직임이었다.

있는 가운데 더욱더 개인들의 의사표현을 감시, 처벌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이 집권여당과 정부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억압도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하고 있다. 핸드폰에 대한 감청도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 임시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방송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장악이 노골화되면서 해당 언론사의 종사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권력과 자본에 의한 통제와 장악이 가능하도록 언론 관련 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풍전등화의 위협 앞에 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표현의 자유가 봉쇄되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공포가 지배하게 되고, 침묵만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되는 사회로 가게 된다. 아직도 '좌파'로 매도하면서 건전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마녀사냥이 가능한 사회가 한국 사회이며, 이런 마녀사냥을 조장하는 정치권력과 그에 결탁한 보수 세력들의 차별적, 인종주의적, 권위주의적인 억압이 횡행하는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로부터 개인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단적인 의사표현인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이르기까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어떤 제약 없이

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명분은 단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표현의 자유의 전면적인 확보를 위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에 반대하고, 그에 저항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이 자유를 아무런 제약 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 선언과 조약과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자유이자 사회구성원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다.
2. 사상의 자유는 주류 사상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비주류, 소수의 사상에 대한 인정이다. 비주류, 소수의 사상이 주류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조건 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무다.
3.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유엔에서 각국에 입법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시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석방되어 시민권을 회복해야 한다.
4.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교는 인정할 수 없으며, 특정 종교를 편들거나, 특정 종교를 폄박하는 정치권력은 인정할 수 없다. 종교에 대한 선택과 개종 등의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의사표현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 국익 등을 이유로 평화적인 의사표현이 가로막힐 수 없다.
6.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의 규정대로 모든 사람은 검열과 허가 없이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이들이 이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7. 현행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물러나야 하며,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오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봉사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거나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공권력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8.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과 자본의 지배는 인정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편집권의 보장과 취재원의 보호, 개인 미디어의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대중매체는 특유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로 일반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아왔다. 일반 시민이 대중매체에 접근하고 참여할 권리는 표현 수단에 대한 미평한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는 다양한 사상들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정보를 독점하거나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10. 표현물에 대한 심의는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사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명확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일반 시민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판단에 우선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 인터넷은 그 밖의 다른 표현 수단을 갖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소중한 의견 발표의 공간이며 다른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권력에 의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여 실명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하거나 개인정보의 보관을 의무화하여서는 안 된다.
12.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며, 교과서 집필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학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집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의 검인정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13.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한다. 비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철폐되어야 하며, 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는 적극적으로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
14.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보와 사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다

양한 정보와 사상을 만들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저작권을 이유로 공정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받아서 안 되며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15. 결사의 자유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정당을 결성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이들 결사의 자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누려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은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자유로운 결사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16.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7.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전쟁의 선동, 인종주의의 선동,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 등 반인권적 표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권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폭력을 낳을 수 있음을 우리는 우려한다.

18. 모든 사람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으며, 타인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대할 의무가 있다.

* 2008년 12월 9일 '민주수호·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미디어아트에서 선언하다.

“헌법 21조를 지켜내자”

2008
인권의날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년 1월 7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지만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미네르바는 인터넷 공간인 '이고라 경제방'에서 활동하던 동안 실물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하였다. 그에 대한 체포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신 구속은 '허위 사실 유포'라는 명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정부를 비판하였기 때문에 탄압받고 있다고 믿는다.

미네르바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계속되어온 표현의 자유 탄압의 정점이다. 2008년 5월 촛불 시위가 시작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정부와 수사 당국은 바로 '광우병 괴담 수사'에 착수하였다. "화장품으로도 광우병이 감염된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거나, "5월 17일에 동맹휴업하자"는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괴담'으로 지목되었고, '동맹휴업'을 제안한 한 청소년이 '학교에 대한 영업방해'라는 죄목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7월에 검찰은 사회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였던 조중동 광고 지면 불매운동 카페의 운영진 24명을 기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 등 강도 높은 수사기법을 총동원하였다. 2009년

2월 이들 네티즌들은 단지 광고주 목록을 공유하는 등 카페를 운영하였다. 이는 이유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들은 우리가 최근 1년 사이 경험한 수많은 사건 중 일부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에서뿐 아니라 언론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무자비하게 짓밟혀왔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절된 후 아슬아슬하게 이어져왔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표면적인 관용은 이 정부에서 노골적인 탄압으로 나타났다. 촛불 시위는 야간에 개최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불법시되었으며 평화적인 시위 참여자들에게 전투경찰의 곤봉과 구타, 물대포를 동반한 연행과 구속이 돌아왔다. 광우병의 위험이나 낙하산 사장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와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두려운 사태는 자기 검열의 만연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표현 매체, 그러하기에 헌법재판소가 “가장 참여적이며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평가하였던 인터넷에서 가장 두려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과 다름없는 동료 누리꾼들이 인터넷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부와 보수 언론을 비판하는 행동을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고난에 처하는 사건들을 지켜보아온 이 시대 평범한 사람들은 “글 올리가 두렵다”면서 자기 글을 삭제하고 침묵 속에 숨기 시작하였다.

2008 표현의 자유 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론적인 의미 확인이 자우리 시대 당면한 자기 검열의 위협에 지지 않으려는 저항의 움직임이었다.

이 선언은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에 맞서 인권사회단체들과 촛

불 시민들이 함께 결성한 ‘민주수호·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 행동’과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인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에서 함께 작성하여 2008년 12월 9일 서울 광화문 미디어액트에서 발표하였다. “헌법 21조를 지켜내자”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2008 표현의 자유 선언에서 인권단체 활동가, 촛불 시민, 그리고 미디어 활동가들이 2008년 봄과 여름 거리에서처럼 만나고자 하였다. 솔직히 각자 영역에서 당면한 활동이 너무 많아 의욕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한 것은 아쉽음으로 남는다. 그러나 선언문이 빠른 시간에 완성되어 회람되고 동의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언제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한 현실 속에서 날로 베풀려진 문제의식이 큰 동력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미디어액트, 인권운동사랑방은 1년여간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심의제도에 대해 연구해 왔고, 그 연구 성과를 이번 선언에서 <미디어융합시대,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의 방향-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를 중심으로>라는 자료 형태로 공개하였다.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내용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전통적인 기본권의 관점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이 주류 사상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비주류, 소수의 사상에 대한 인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불편부당한 자유론이 아니라 현실 사회의 권력관계를 전제로 한 이런 인식이야말로 실제 표현의 자유가 누구를 위해 선언된 권리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선언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 및 결사의 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하였으며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반대하였다.

또한 일반 시민의 미디어에 대한 참여의 권리에 특별히 주목하여 대중매체(public access)와 인터넷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명시하였다. 국제 미디어 활동가들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하여 특히 주목하는 미디어에 대한 권리는 그간 표현의 자유가 '언론·출판의 자유'로 국한되어 왔다는 비판의식에서 태동한 것이다. 근대 시민혁명 과정으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되어왔지만, 언론·출판 등 주요 표현수단은 특권층에 의해 독점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 등 거대 미디어 기업이 등장한 현대사회에서 그 폐해와 정보 왜곡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마땅히 이들 매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통상 규정되어온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권리로부터 다소 사회권적인 '표현 수단의 공공적 보장'에 대한 권리로 확대되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비주류와 소수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문제의식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쟁, 인종주의, 장애인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 표현들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늘 인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소극적인 '부자유의 부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알 권리의 추구하고 정보의 공정 이용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뿐 아니라, 최근 저작권산권 담론

에 포위되고 있는 표현 환경에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언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촛불 시위 참여 시민들에 대한 연행, 소환, 형사처벌 위협이 계속되었다. 정부여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고 관련 법의 재개정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정부를 비판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해왔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빼앗긴 권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선언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으며, 타인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대할 의무를 지지하였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빼앗긴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여 투쟁하는 길뿐이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구!!”

1. 청소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구!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지!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뽕이야.

♪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건 아냐.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해서 문제이라고 낙인찍는 당신이 바로 문제라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해.

2.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

♪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나 집회나 점거를 하거나 수업거부나 시험거부나 등교거부나 기출 등등의 파업 행동



♪ 나이가 적다거나 학생이라는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우~

을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권리야.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써.

3.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존중하란 말야!

♪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업이나 가치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짬뽕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셋 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만일 이 사회에 위협하거나 유해한 것들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4.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실제로 충분히 반영하시오!

♪ 교칙이나 집안에서의 규칙 등을 정할 때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

♪ 청소년에게는 성탄절 썰이나 수능 떡값 등의 성금을 강제로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5. 청소년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어.

♪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시켜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해.

♪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돈을 벌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해.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번 돈을 남(부모 등등)에게 맡기지 않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거라구!

6. 청소년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건 다른 용도를 위한 것이건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해.

♪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부당해!

♪ 노동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에게는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고, 이런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 시간을 채워 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7. 청소년들은 적절한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이 사는 곳은, 살 만한 넓이와 시설의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생태적이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한 곳이어야 해.

♪ 쫓겨나서 살 곳이 없을까 봐 다른 사람들(부모 등등)의 일방적인 명령을 들어야 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해.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쉼터나 그룹홈처럼 지금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들도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해.

8. 청소년의 사랑과 성적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거나 짓밟지 마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

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성은 청소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런 분야가 아니야.

♪ 청소년은 성매매나 성폭력, 성적 착취를 당하면 안 돼. 또 성매매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도 않아야 하지. 그러기 위해 청소년의 주거권이나 경제적 권리 등 다른 인권들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해.

♪ 이성애만이, 또는 여/남 성별이분법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건 무개념이야.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모두 차별 없이 존중하란 말야!

♪ 단, 성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마초스러운 행동 등은 인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9. 청소년에게는 자기 머리카락이나 복장 등을 마음대로 하고 꾸밀 권리가 있어.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교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게 하지 마! 사복을 입을 자유도 있다구!

♪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은 누가 정하나? 염색, 파마, 삭발, 레계, 고데기, 생머리 등등 청소년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10. 청소년이 동네북이나? 청소년은 위협적인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청소년은 학도호국단 등으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살 권리가 있어. 입시경쟁이나 안전사고나 폭력이나 빈곤함 등을 비롯해서 청소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간접적인 폭력들은 사라져야 해.

11. 청소년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해.

♪ 집에서 통금시간을 정해놓거나, 학교에서 밖에 나갈 때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아선 안 돼.

♪ 청소년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국적 등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을 비롯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시설 등을 사회가 책임져야 해.

12. 청소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살 수 있어. 안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 인터넷이나 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 전단지, 영상 등등을 만들고 배포할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열하거나, 허가받지 않았단 이유로 훼손하거나 탄압

해선 안 돼.

♪ 청소년은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어.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청소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집회를 했단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해.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정보를 못 접하거나 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해선 안 돼. 청소년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해.

13. 청소년은 자신만의 공간과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 부모나 교사나 경찰이 마음대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등 우리만의 기록을 보는 건 인권침해야!

♪ 바꿀 수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에게 번호를 매겨 관리하고, 지문 다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을 강요해선 안 돼. 급식비를 안 낸 사람을 걸러내려는 관리하이유로 함부로 지문을 찍게 해서도 안 돼.

♪ 야이 스토커야, 너 내가 그렇게 좋나? 감시 카메라로 청소년들을 감시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스토커 짓은 우리의 안전을 핑계로 우릴 통제하는 거야!

♪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비롯한 성적 등등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는 인권침해야. 성적표도 맘대로 집에 보내거나 하지 말란 말야.

14.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생각하고 주장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어.

♪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 믿는 종교를 청소년들이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게 말이 되냐?

♪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가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국가보안법이라거나 정부, 교사, 부모 등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을 처벌하는 건 박물관으로 보내자.

15.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강제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어. 교육에서는 인권이 지켜져야 해.

♪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신체적 조건이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에서 좀 알아서 했으면 해. 그리고 교육은 되도록 공짜인 게 기본 아니겠니?

♪ 공부 왜 해? 청소년은 시험 치는 기계가 아니야! 시험점수로 매겨진 등급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구. 입시경쟁을 폐지하란 말이다!

♪ 야간 '자율' 학습이라면서 강제로 실시하는 건 뭘미?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만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해. 교과서건 뭐건 다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말란 말야.

♪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소통이야.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해. 청소년에게는 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훈계는 너만 하나! 너나 잘하든지!

♪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살릴 수 있고 다양성 있는 교육과 넓게 생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 선후배 관계나 나이, 직위 등의 사이에서 차별이나 폭력,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나 아웃팅, 폭력, 기타 인권침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권교육은 꼭 있어야 해.

♪ 청소년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탐색하고, 사회의 현실, 과학적 지식, 시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학문들과 자기 알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만큼 많이 배울 권리가 있어. 외국어 교육은 영어 같은 한 언어만 신봉하고 뻑센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외국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해.

♪ 교육 환경은 충분히 좋아야 하고, 교육 재정이나 예산도 충분해야 해. 예를 들어, 수십 명씩 오밀조밀 부대껴야 하는 교실이라거나, 찌는 여름이나 꽁꽁 얼는 겨울에 에어컨, 히터 등을 교무실에만 뽕뽕하게 틀고 학생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대체 뭐니?

16. 청소년은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쉬 수 있어야 해.

♪ 방학, 휴가, 공휴일이나 쉬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생리 때나 이플 때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쉬 수 있어야 해. 학

교 등에는 청소년들이 설 수 있는 휴식시설이 마련되어야 해.

♪ 청소년은 잘 쓸 권리가 있어. 수업시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이 급한데 못 가게 하거나 하면 안 돼. 병 걸리면 책임질 거야? 화장실의 청결 상태나 시설, 숫자도 충분히 좋아야 해.

♪ 잠 좀 자자! 우리는 충분히 컨디션이 회복될 만큼 잘 수 있어야 해.

♪ 뻥센 경쟁교육이나 생존의 위협 등도 청소년들이 충분히 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없어야 해.

17. 청소년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즐길 권리도 있지.

♪ 청소년은 자신의 취미를 즐길 수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돈이 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보장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도 보장되어야 해.

♪ 보호라는 핑계로 19금 딱지를 붙이거나 공부하라면 청소년들의 문화를 통제하거나 하는 건 부당해. 사전심의로 나이 제한을 두는 건 검열이고 통제야!

♪ 사회는 바람직하고도 다양한 놀거리들을 제공하고 장려해야 할 책임이 있어.

18. 청소년은 먹고 싶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해.

♪ 청소년에게는 생태적이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청소년은 취향이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음식을 거부

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해서 안 돼. 이것들이 정말로 유해하다면 이것들을 아예 없애거나 유해성을 알리고 줄이거나 끊는 것을 도와야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강제로 금지하는 건 청소년을 만만하게 본 인권침해야.

♪ 청소년은 원산지, 생산 방법, 유통 경로, 유해성 등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

19. 청소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충분한 휴식과 여유, 그리고 적절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등은 중요해.

♪ 청소년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해. 청소년의 건강권은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속에서 그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해.

♪ 의료서비스의 과정에서 청소년이라거나 경제적인 조건 등등 때문에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해서는 안 돼.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에이즈 감염 등 의료상의 정보를 함부로 알리거나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알려선 안 돼.

20. 청소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해.

♪ 청소년들은 충분히 실수하고 경험을 쌓아갈 권리가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꾸고 추구할 권리가 있어.

♪ 청소년들의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회가 가능한 한 제공해야 해.

♪ 청소년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여기의 것이어야 해. 청소년은 지금을 사는 인간이고, 미래로 삶이나 행복을 유예한 인간이 아냐.

P.S. 여기에서 선언한 권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로 오해해선 안 돼. 모든 인권은 소중하니까~

*2008년 12월 10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선언하다.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2008
인권선언

공현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부처가 그랬던가, 티몬과 폼바가 그랬던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욕심 버리면 즐거워진다고……. 하지만 열반세계도 애니메이션 속도 아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없다. '2008 청소년인권선언'은 이런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인권선언이다. 단순히 분량만 보더라도 그렇다. 전문도 없는 주제에 바탕체 10pt 줄 간격 160% 기타 등등 한글 기본값으로 설정했을 때에도 A4로 5페이지를 차지하는 청소년인권선언은 무슨 할 말이 그리도 구구절절 많은지 릴레이 인권선언 중에서 단연 최고의 분량을 자랑한다. 욕심이 많으면 고생하는 법이라서, 이런 많은 분량을 전단지로 우겨넣느라 디자인상의 애로사항도 많았고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논란, 심지어는 말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청소년인권선언의 내용이 많아진 것은 그 선언을 만든 방식의 영향도 있지만, 하나도 빼놓은 것 없이 인권선언을 만들려고 했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의 욕심도 컸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고민 안 해왔던 고민 다 풀어놓고 나누면서, 청소년인권선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이야기들을 다 넣으려고 덤벼들었다. 설

평 지금 당장 운동이 될 수 없더라도,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청소년인권선언만큼은 청소년인권의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선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아심작 '2008 청소년인권선언'이 나왔다. 종이 나뭇잎을 복사해서 나눠주고 청소년들과 여러 활동가들에게 '청소년인권 나뭇잎'에 권리 하나씩을 써달라고 해서,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생생한 표현을 살려가며 만든 2008 청소년인권선언. 여기에서 그 선언의 내용과 문제의식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몇 가지 만들면서 신경 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린 부분들 몇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선언을 작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나뭇잎'에 적어준 표현이나 사례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다. 청소년인권선언에서 각 조에 "♪" 표시를 달고 늘어놓은 이야기들은 모두 그렇게 모아진 목소리들과 우리 안에서 토론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들어간 것들로, 상당히 구구절절하다. 또 청소년인권선언은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거나 눈치 보며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생각했기에 말투는 과감히 반말을 택했다. 그냥 "~다"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고 나뭇잎으로 받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대로 살리기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야", "~어"를 기본 말투로 하게 됐다.

청소년인권선언 내용 중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 중 하나는, 마지막에 저항권과 연대권을 넣은 2008인권선언과 달리 청소년인권선언은 무려 제2조에 저항권을 넣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존엄성 선언과 차별금지

라는 원칙을 담은 제1조를 제외한다면 가장 앞에 온 권리인 셈이다. 그것은 그만큼 인권이 보장될 기미가 코딱지 만큼밖에 안 보이는 지금 이 사회에서, 저항권이야말로 중요하면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선언을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좀 난감해져버렸다. 해서 건강하게 살 권리와 의료권에 대해 쓰고 나서 한참을 어떤 권리를 마지막에 넣을지 회의를 했는데, 결국 들어가게 된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말하자면, 행복추구권?)였다. 이 모든 인권들이 보장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뉘 그런 메시지다.

다음으로, 청소년인권선언은 특별히 자유권이나 사회권을 구별해서 쓰려고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은 불가분하기 때문이고, 좀 더 부연하면 청소년인권에 있어 자유권과 사회권 같은 것들은 모두 한데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강권을 인권 주체(청소년)의 자유의지나 자율성/자발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하겠다고 한 결과 청소년들은 강제로 좋은 음식을 먹여져야 하고 건강해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건강권, 주거권 등 사회권에 속하는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들이 사회권인 동시에 자유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유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나 참여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주거나 경제적 능력 등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선언을 보다보면 혹시 고개를 가우뚱하게 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8조 먹을 권리의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을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해서는 안 돼.” 라는 부분이 그렇다. 이 선언에는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의 ‘보호주의’를 거부하는 내용을 뚜렷하게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며,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풀어놓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혹시 이 선언이 많은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더라도, 이 선언을 보고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길 바란다(사실 음주 권이나 술, 담배 살 권리 등이 나뭇잎에 꽤 많이 나오기도 했다).

청소년인권선언은 이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급하게 푹푹딱딱 만들어서 누락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아직 그 존재가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다. 앞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발달과 함께 성장 해가고 보완되어가는 청소년인권선언이 되길,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읽고 영감을 얻는 청소년인권선언이 되길 바란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청소년인권선언이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활동해나갈 일일 테지.

환자 권리선언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주체적 권리를 외치다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자이를 실현하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건강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 권리는 이러한 건강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로 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치료를 요하는 모든 환자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의료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일상생활 복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환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선택·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환자가 쉽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질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과 함께 ‘인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를 추구하여 소외 아동, 정신질환자, 노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성적소수자들의 사회적 소외계층도 차별 없이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요구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가 영리화되어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필연적으로 환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보건의료 자원이 낭비되며, 건강과 생명보다는 이윤이 중시되는 의료제도

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원한다. 따라서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 환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환자 권리'를 선언한다.

1.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환자는 언제든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4. 진단, 치료, 재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5.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환자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는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상황을 보장해야 한다.
7. 모든 환자는 필요한 의약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8. 장기투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환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노동·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10.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증진하며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 2008년 5월 25일, 12월 10일 환자 권리선언 참가자들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서울 광화문에서 선언하다.

환자, 권리를 말하다

김경애 | 환우회사랑방



우리는 모든 인류가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원한다.

최근 어느 의료 일간지에서 '환절기 감기로 인한 병원 이용 환자 감소, 항생제 구입 환자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필수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은 기급적 복용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이롭다. 그러나 의료공급자들은 과거에 비해 항생제 과용이 줄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항생제 구입이 줄어드니 수익이 감소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 환경에서 정보 취약자인 환자들은 의료계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신뢰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며 부작용까지도 숙명처럼 받아들여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보급으로 환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각종 질환자들의 커뮤니티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인식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같은 질환자들이 비슷한 상황, 비슷한 부작용, 비슷한 죽음, 비슷한 어려움 등에 대한 소통을 시작했다. 또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규정들과 치료법, 의료 유통과 공급 구조, 의료법 체계 등에서 환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발견했다.

2003년 겨울, 지금은 대부분 사망한 당시 백혈병 환자들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약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접거하고

열흘 동안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골수이식이 어려운 한국현실에서 백혈병을 약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환자들에게 생명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당시 글리벡이라는 약의 공급가격은 하루치 복용가격이 당시 20만원 가량이었다. 하루에 20만원이라는 공급가격은 오로지 약물 복용 외에 방법이 없는 돈 없는 환자들에게는 죽으라는 선고와 같았다.

우리가 이플 때 도와주라고 낸 건강보험이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용지물인 현실에 대해 환자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글리벡 약가 투쟁의 결과로 만성 백혈병 환자들이 보험가로 약을 공급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혼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두 환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년 5월 마지막 주간을 환자 권리 주간으로 잡기로 했다. 그 두 사람은 백혈병 환우회 활동가였던 고(故) 김상덕 씨와 원폭2세 환우회 활동가 고(故) 김형을 씨이다. 이들이 함께했던 백혈병 환우회는 이후에도 골수이식의 문제, 환자가 직접 피를 구해 와서 헌혈을 받아야 하는 현실 등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의료 환경이 개선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아직도, 환자의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의료 공급 체계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회의 자리에는 의료공급자들과 공무원들이 모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의료주체로서 환자들과의 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겨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환자들을 지금은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은 계속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지난 수년 동안 환자들과 환우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좀더 잘 인식하게 되었고, 좀더 다양한 범주에서의 환자 권리들까지 이

야기하고 있다.

의료 이용에 있어서의 환자 권리뿐만 아니라, 취업과 사회적 차별, 환자 개인뿐만이 아닌 가족의 문제…… 병실 밖에서 환자의 삶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모여면서 2008년 봄 환자 권리선언문이 만들어졌다.

2008년 대대적으로 환자 권리선언을 만들고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많은 환우회들과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것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활동이 없던 환우회들도 환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2008년 인권선언 60주년 행사에 참여하면서 가장 유쾌하면서 의미 있었던 기억은 각각 참여 단체들의 권리를 적어보고, 나는 후 다시 묶어보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권리들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 공존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시간이었다.

그 후 다양한 연대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동성애자로서 환자의 권리, 비정규직노동자로서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해 얘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간 각자 잘 모르던 단위들 안에서 다뤄져왔던 환자 권리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바람도 갖게 되었다. 그날 새겼던 희망들로 앞으로 함께한 단위들과의 연대의 고리를 통해 다시금 녹일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주민 인권선언

세계 인권선언 채택 60주년 및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이 존중되어야 함을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 및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으며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1.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게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이주민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
2. 모든 이주민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언어, 체류 자격을 이유로 타인에게 예속되거나 기본적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3. 모든 이주민은 문화적 주체로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문화나 사상을 받아들여도 강요받아서 안 된다.
4. 모든 이주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고, 경험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모든 이주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아동이나 그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5. 모든 이주민은 이주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주민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체류할 권리를 갖는다.
6. 모든 이주민은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7. 모든 이주민은 한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8. 모든 이주민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유입국 정부는 박해를 피해 이주한 이주민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9. 모든 이주민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유입국 정부는 이주민에게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할 것을 강요하거나, 귀화하지 않은 이주민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가 무국적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10. 모든 이주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국적, 성별, 체류 자격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11. 모든 이주민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노동권을 갖는다.
12. 모든 이주민은 직장 이동의 자유를 가지며, 이 자유는 인종, 성별, 국적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13. 모든 이주 아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14. 모든 이주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2008년 12월 14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소속 회원 및 활동가들이 서울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선언하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갈릴레이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살롱의집, 곤지암다문화마을,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살롱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소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주민 권리는 곧 인권이다!

Migrants Rights are Human Rights!

이경숙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이 60돌을 맞았다.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뉘진 이주민, 그나마 적은 권리마저도 사증(비자, visa) 유형에 따라 또 합법체류 여부에 따라 쫓아지고 또 쫓아지면, 그들에게 허락된 인권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12월이다. 12월이면 늘 ‘이주민의 날’을 선포하고,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알리고, 이주민들도 이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할 ‘모든 사람’임을 외치고 또 외치지만 세계인권선언과 그 정신을 계승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연한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은 1998년부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내에 소개하고 12월 18일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을 전후하여 이주노동제도개선 투쟁과 협약비준촉구캠페인을 함께 전개해왔다. 2007년부터 이주노동자 중심이던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이주민의 인권 현실을 알리기 위해 ‘유엔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한국대회’를 개최하고, 이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무대를 마련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주민들은 나이, 국적, 언어, 피부색은 달라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고단한 현실을 공감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민인권선언’의 각 조항은 2007년과 2008년 이주민의 날 기념 대회 무대에 오른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선언문 형식으로 풀어 쓴 것이다.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제한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임을 표현했던 고용허가제 스리랑카 노동자의 이야기를, 부모님의 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찾아왔을 뿐인데 차별과 냉대에 눈물 흘리는 재외동포의 아픔을,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어 한국에 왔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학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의 슬픔을,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는 조국을 가진 난민들의 삶을, 미등록이라도 노동자요, 긴 시간 한국인의 삶을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을, 작은 병을 견디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을 아무런 사회보장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주민의 건강권 문제를, 한국으로의 결혼이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권리의 형식으로 담아보았다.

‘이주민인권선언’은 처음에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문제,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권리,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재외동포의 노동권 보장과 자유왕래보장, 이주 아동의 학습 및 체류권에 대해 현실과 요구사항을 단락별로 전개하고 마지막에는 요구사항을 집약적으로 적는 형식을 취했다. ‘이주민인권선언’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민 인권 현실을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60돌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기존의 형식처럼 현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하더라도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 항목으로 표현해보기로 하고, 초안에 나왔던 다양한 이주민의 권리를 어떤 언어로 표현할지를 구상하였다. 60년이 된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은 과연 보편적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답게 오늘의 한국 이주민 인권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이주민들이 누려야 할 인권을 상기하게 하는지 살펴보았다.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은 권리선언이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이나 활동가들에게는 조항 수가 너무 많다는 판단으로 이주민 인권선언은 2008년 현재 한국의 이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로 구성하여 총 14개 조항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이주민인권선언에서는 여러 차별의 형태에 '체류 자격'을 추가하였다. 우리 법은 대부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미등록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비자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이주민은 우리 것을 배워야 할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을 동등한 만남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부단히 '우리 것'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외의 이주민은 새로운 사회에 대해 접하고 배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이 그들 고유의 독특함을 가진 존재로, 서로에 대해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 선언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라는 표현을 통해 이주민이 문화적·인격적 주체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사회 구성원'인 이들의 권리는 시혜적으로 베풀

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형식을 빈 이주민인권선언은 이주민의 인권이 보편타당한 인권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시간적 제약으로 집행단위 이외에서 더 폭넓게 논의하지 못한 점과 영어 이외의 다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번 이주민인권선언 작성은 다음 이주민의 날에는 이주민들과 함께 이주민의 권리를 이주민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만들어보자는 새로운 과제를 남겨주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기초로 한 "인권"이 선언을 넘어 이주민의 삶으로 녹여지기를 바라본다.



불씨 선언

* '불씨'는 <2008 인권선언>을 함께 만든 시민들입니다. 불씨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선언한 내용을 가려 뽑았습니다.



사람냄새 나는 살맛 나는 세상. 겨울에 반삭한 내 머리가 추워... 획일화
된 교복과 두발에 저항하는 불씨! ~ ~ 레볼루션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살아있는 걸 보니 존귀한 생명입니다. 선
언할 필요도 없이 존엄한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침

조금씩 다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이 알록달록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김형석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지거나 잘못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그리고 다수에 의해 소수의 생각이 지배당해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악을 통해 하나의 불씨가 되어 저항하겠습니다.
유신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 균림하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요호호 난다

따이루가 행복한 세상♥ㅋㅋㅋ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본과 권력은 빼구
행복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원하지요. 따이루

인권을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될 세상을 위해 힘을 내서 움직일 것이다.
아르망드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서로 연대할 것이며, 지킴을 위한 저
항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보라

모두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 내 생각, 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남은들

마음 놓고 휴학하고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는 권리. 학교에 붙잡혀서 학
점의 노예로 끄는 거 너무 힘들다. 학력, 학벌, 학점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서동호

다양성을 존중받고 수면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무한 경쟁이 아니라 참고
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정부는 기만하거나 박탈하지 마라.
류민하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차별 없이 인정하고, 야만은 야만 그 자체로 여지
없이 혐오하는 세상을 위해. 김수

<2008 인권선언>이라는 첫걸음을 즐겁게 땀 수 있기를. 권리가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박석진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정아

잠을 8시간 이상 잘 권리

장서연

평화로 건강하게!

송원영

모두가 공유하고 사는 세상이지만 생각과 행동까지 모두가 같을 수는
없고 틀린 생각과 행동도 인정받고 싶을 뿐!

김덕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을 인격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세상에는 누구나 부자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아프건 '인권'이 있다.

서상희

인간답게 산다는 게 정말로 뭔지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도
가능한 인간다운 삶들이 가진 자들의 거짓말과 탐욕으로 인해 파괴당하
지 않을 권리는 있다.

야해

나는 망상을 할 권리가 있다.

김희영

나는 아침을 먹을 권리가 있다.

최유리

견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달릴 것을 강요하는 세상, 그 끝에 사람답게 사
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다는 건 이제 너무 분명한 것 같아. 한 발 한 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꿈꾸면서, 나답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
소소하면서도 거대한 일상을 살피면서, 그리고 그런 이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세상으로... 걸어보자~ ^^

미류

장애인 콜택시 기다리는 데 1시간, 장애인도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싶
다.

김혜자

나는 유급휴가가 필요해! 시간강사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라!

혜영

느리게 살 권리, 자연과 호흡하며 살 권리

김지선

나는 약값에 상관없이 나를 치료해줄 약을 먹을 권리가 있다.

성진

쉬고 싶어요...

응호

얼어붙은 평바닥에 닿을까 행여라도 꺼질까 무서워 한 발짝 내딛지 못
하다가도 더불어 아래로 향하는 불씨들을 마주하며 힘을 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손내밀어보고자 보탬니다. 아래로 뜨겁게 맞대어!

깡이눈

한 개인의 삶이 존중되고 한 개인의 행복이 중요시되며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정호

모든 사람은 살 집을 필요로 한다. 국가여 응답하라!

남철관

우리 함께 행복을 짓고 나누고 싶어요

김경화

돈없어도 공부할수 있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김연정

힘 약한 사람이 무시 받거나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신영선

모두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명구

이주노동자들은 '말할 줄 아는 기계'가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시민이고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왜 인권의 빛은 비취지 않습니까? 등록·미등록에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영섭

겉모습으로 함부로 판단당하지 않을 권리

해수

무언가 불안한 하루 속에 사람들 눈빛도 심성도 날로 강박해지는 것 같다. 웃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할 권리!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고 보여줄 권리, '결혼'하지 않고 '가족'처럼 모여 살며, 만나고 헤어질 권리를! 마토

직장 생활에서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집값이 너무 비싸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요, 여성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민

일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유미

내 맘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 재화를 자신의 직업 활동으로 보장받을 권리

김수진

농부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짓고 넉넉히 살수 있는 세상, 땅 투기꾼들에게 땅을 빼앗기지 않고 찾아올 권리

신미영

신나게 놀 권리를!! 신나게 놀기 위해서 일을 적게 해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신나게 놀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와 놀이의 향유가 가능하기를, 신나게 놀기 위해서 노는데 돈이 안들기를...

랑희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꺾이지 않게... 88만원, 88만원... 지겹다. 청년의 인권을 보장하라!

ruri

뛰는 심장을 느끼면서 살아갈 권리 ^^

만적의 후예

난 불안한 비정규직노동자이지만 그래도 직장이 있고, 주인이 언제 보증금 올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따뜻한 내 공간이 있고, 영화며 음악이며 미술로 가끔이나마 내 마음을 위로하며 즐기며 살고 있다. 내가 인권을

떠올릴 때는 집을 빼앗긴 사람들, 해고된 사람들,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들을 거리에서, 신문에서 만날 때다.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내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달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삶을 살
지만 누구나 누려야 할 공통적인 기본 선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본 선
은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핑크치타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권하고는 다르다는 생각
이 듭니다. 안전한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장이 인권이다!

넘치는 자신감

맘 놓고 살 집이 있어야 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려고 한다. 피가 말
린다. 하지만 집주인만을 욕할 수는 없다. 집은 인권이다!!!

여진

불안을 떨쳐버리고 살고 싶다. 사는 집이 없어질까 두렵고, 큰 병 걸릴까
두렵고, 일자리가 없어질까 두렵고... 이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불씨

누구나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 '문화'를
느끼고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유 있는 사람들만 문화를 즐
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가 세계를 변혁한다!

지러난

곳곳에서 자행되는 공권력의 무지막지함.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봉기권이라는 게 있었다. 공권력이 폭력배와 다른 모습이
아닐 때,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권리는 무엇이 있는가. 법원의 판결을 기
대할 수도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도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하나
를 고민하게 된다. 압제에 대한 봉기의 권리는 모든 인민의 권리다.

외유내강

인권은 나의 힘!

한상희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도 무시받지 않을 권리!

윤선영

나는 내 관계 속에 평화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

노현웅

표현의 자유와 창작물 지킴이 당연한 세상을 꿈꾸며

이선영

위안부 할머니에게 명예와 인권을!

김현정

직장인의 여유로운 한 끼의 권리!

여효경

성차별·이성애중심주의를 깨부술 수 있는 권리 ㅋㅋㅋ

비취

나에게는 몸에 안 좋은 컵라면으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대로 된 밥! 너무 비싸요!!!!

손경화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뭉칠 수 있는 권리, 뭉치더라도 탄압받거나 쫓겨
나지 않을 권리, 평생 살아온 땅과 사랑하는 이웃 동료들과 헤어지지 않
을 권리! 장진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 신준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권리 화초

취업 압박을 받지 않을 권리! 정인

Stop Crackdown!! 니런드라, 람버다리

평균, 정상성을 강요받지 않고 나답게 살 권리! 반다

정의를 위하여 류은숙

이름 스스로 지을 권리 김은진

살아가는 데 맘 편할 권리 문혜정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이상희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생명을 위한 권리! 정종현

일하고 싶을 때 일할 권리,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는 권리!

연영석

나는 누구나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한다. 김형택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권리 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사회에 세상에 발언할 권리! 사람으로 살아
갈 권리선언!! 최선미

아이를 낳고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싶다. 몽실이

우리의 권리를 말할 권리!! 김선휴

성소수자가 자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소지현

따뜻할 권리! 이종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 유다혜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김종길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 전쟁은 안 된다! 진재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할 권리

송상교

노동자는 분할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경훈

혁명은 부엌에서부터!

백승연

청소년이 담당해질 수 있는 권리

윤기현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없더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어떤 이
유라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살 만한 집에 살 권리, 가난해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밥과 반찬을 굶지 않을 권리, 전기·가스를 안정적으
로 공급받을 권리,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등등 사람의 생존
을 위해 필요한 건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슈아

